

## 2022년도 제5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2년도 제5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(수의7급, 수의연구사)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15일  
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

### 1. 선발예정분야 및 인원

(단위 : 명)

| 계급  | 직렬   | 직류 | 선발예정인원 | 임용예정기관 및 인원 |
|-----|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----|
| 합 계 |      |    | 8      |             |
| 7급  | 수의   | 수의 | 7      | 도 7         |
| 연구사 | 수의연구 | 수의 | 1      | 도 1         |

### 2. 시험방법

#### 가. 1차시험 :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#### 나. 2차시험 : 면접시험 ※ 1차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.

- 인성·공직관,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-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, 능력 등 적격성 검정

### 3. 시험시행 일정

| 응시원서 접수기간   |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  | 면접시험일자 (예정)             | 최종합격자 발표(예정)  |
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'23. 1. 9.(월) ~ 13.(금) [5일간]<br>※기간 중 업무시간 내(09:00~18:00) | '23. 1. 19.(목) | '23. 1. 30.(월) ~ 31.(화) | '23. 2. 7.(화) |

※ 시험 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공고 및 발표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.

※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합니다.

## 4. 응시자격

※ 적용기준일(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)

### 가. 응시결격사유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, 제66조(정년)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해당되지 않고,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.

#### ▶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(결격사유) ◀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# ▶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 (정년) ◀

-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#### ▶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◀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 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 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▶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◀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-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-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 -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 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-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   - 가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    - 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    - 다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    - 라.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    - 마. 삭제 <2022. 1. 4.>
    - 바. 삭제 <2022. 1. 4.>
      - 사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
      - 아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
      - 자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
  -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  - 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  -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 -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 -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  - 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 - 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#### 나. 응시자격

| 계급  | 직렬(류)    | 응 시 자 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|---|
| 7급  | 수의(수의)   | 「수의사법」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|
| 연구사 | 수의연구(수의) |   |

다. 응시연령 : 20세 이상(2003. 12. 31. 이전 출생자)

라. 거주지, 성별 : 제한 없음 [단,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]

## 5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- 가. 원서교부 :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
- 나. 접수장소 : 경남도청 인사과 채용담당(본관 2층)  
※ (우51154)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, 경남도청 인사과 채용담당
- 다. 응시수수료 : 7,000원 (경상남도 세외수입고지서 납부)  
※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 
※ 응시원서 접수 당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「한부모 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,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함
- 라. 접수방법 : 접수기간 내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 (※ 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)  
※ **우편접수 시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**하며, 응시표 수령을 위해 반드시 반신용 봉투 ('등기용 우표' 부착 및 '수신인 주소 · 성명' 기재)를 동봉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.

## 6. 응시자 제출서류

- 가. 응시원서 1부 : [별첨1]의 서식 작성 (응시수수료는 경상남도 세외수입고지서 납부)  
※ 경상남도 세외수입고지서는 경남도청 인사과에서 발급  
※ 우편접수의 경우 우체국의 통상환증서(응시수수료 금액)로 대체 가능  
**※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응시수수료로 미인정**
- 나. 이력서 1부 : [별첨2]의 서식 작성
- 다. 자기소개서 1부 : [별첨3]의 서식으로 1장에 작성 후 제출
- 라. 면허증(수의사) 사본 1부 :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
- 마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 : [별첨4]의 서식 작성  
※ 모든 서류는 6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하며,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,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 만약,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,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
※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사관의 공증된 서류만 인정  
※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## 7. 응시자 유의사항

### 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】

- 가. 면접시험일까지 외국 및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난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.
- 다.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,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마스크를 계속 착용 하여야 합니다.  
(※ 신분 확인 시간 이외에는 반드시 착용)
- 라. 응시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마.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**확진 및 자가격리 중인 응시생은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**하며,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응시생에 한해, 사전 신청을 거쳐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,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바. 응시자는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(첨부)에 따라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【일반사항】

- 가.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서 복수 직렬 원서접수는 불가합니다.
- 다.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  
(※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)
- 라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,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마.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바. 최종 합격자는 임용예정 기관에 임용된 후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이 관련 법령에 의거 제한됩니다. (※ 경력경쟁임용시험은 4년간 전출 제한)

- 사.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아.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.
- 자.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경상남도 홈페이지(시험정보란)에 게재합니다.
- 차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(채용담당 ☎055-211-3521)로 문의바랍니다.

붙임 1. 응시원서.

- 2. 이력서.
- 3. 자기소개서.
- 4.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. 끝.